

의안번호	제 150 호
의결년월일	1997. 2. 28.
의결사항	가결

발 의 자	조강천의원외 3인
제출년월일	1997. . .

농업용 면세유배정 현실화 및 농업용 유류가 인하에 대한 건의문

수 신: 의 장

제 목: 농업용면세유배정현실화및 농업용유류가인하에대한 건의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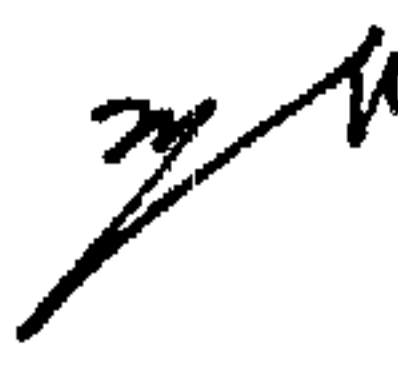
위건을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임
과 같이 발의합니다.

불 임 : 안건 1부 끝.

발의자 : 조 강 천

(찬성의원 서명 : 불임참조)

의안찬성의원서명

성명	서명	(인)
이홍식		
류정우		
유성태		

■ 제안설명

우리의 농촌은 정부의 신농정 시책에 힘입어, 농산물수입 개방등 어려운 농촌 현실에서도 소득향상을 위하여 꾀꾀이 일해 왔습니다.

특히, 농업용 난방및 농업기계용 유류를 면세조치하여 영농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어 환영하고 있었으나,

작금의 계속된 기름값 인상과 면세유류 부족은 영농비추가 부담으로 우리의 농촌 현실이 또다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 보은군의회 의원일동은 농민들의 심정을 심분 헤아려 정부의 대농민정책에 대하여 개선을 촉구하고 유류값 인하와 면세유류의 적정 배정을 요구하는 군민의 뜻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 하고자 하오니 본건의문 낭독후 찬성하시면 기립박수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 면세유 현실화 및 농업용유류가 인하에 대한 건의문

- 복지국가 실현에 정려하고 계시는 총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우리의 농촌은 정부의 신농정 정책에 힘입어 시설채소 현대화, 축사시설 현대화등 각종 농업용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정주권개발 및 문화마을 조성등으로 농어촌 환경을 개선하여 “돌아오는 농촌”으로 육성시키는데 지방정부와 우리 의회의원 모두는 머리를 맞대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특히 정부에서는 조세감면 규제법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용난방 및 농업기계용 유류를 면세조치하여 농민들에게 영농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어 환영하고 있으나,
- 작금 계속된 기름값 인상에 따른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어 상대적으로 농가소득이 급격히 줄어드는 실정으로 면세유에 대한 실망과 함께 영농 의욕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 더우기 국제 원유값이 지난 연말보다 18.1% 하락 하였고 지난해 7월이후 최저수준인 배럴당 17달러선을 기록하여 인하 요인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류값은 업체 자율화라는 미명 아래 농업용 면세유 값이 1년새 48%나 올랐는가하면 금년도 면세유 배정량이 신청량(사용 농가기준)에 60%선 밖에 되지않아 바쁜 농사철을 맞아 면세유류 부족현상이 심각하기만 합니다.

- 특히 전형적인 농업지역인 우리군의 농민들에게는 어느 지역의 주민보다 심각한 영농 의욕상실과 함께 농업용 면세유 현실화 및 농업용유류가 인하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농민 모두의 심부름꾼이며 대변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의원 모두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 아래 다음과 같이 농민들의 뜻을 담은 간절한 건의서를 송부 하오니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책을 강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 음

1. 농림사업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설 채소와 축사용 난방 및 농업기계용 면세유류를 현실화하여 신청량대로 다시 조정. 배정해 주시고,
2. 농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 원유값 하락 추세를 감안하여 농업용에 필요로하는 유류를 전량 면세조치 하여 주거나 소득보장을 위한 특별보조금을 지원하여 주시고
3. 금년도 농협중앙회로 신청한 농업용 면세유 배정량을 비축하지 말고 필요시 쓸수있도록 전량 배정토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 2월 일

충 청 북 도 보 은 군 의 회 의 원 일 동